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611-7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
(연산4동 586-7)중소기업중앙회 8층
T. 051) 861-9375 9365 / F. 051)711-7361
www.kbiz.or.kr

FACSIMILE

수신처 외국인근로자 고용 담당자	발신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
팩스번호	팩스번호 051-711-7361
전화번호	전화번호 051-861-9375, 9365
발신일	총 매수 표지포함 5매

제 목 : 외국인근로자 업무대행 계약서, 위임장, 안내문 송부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업무대행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서, 위임장, 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,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우리 지역본부 팩스(051-711-7361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3. 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절차 안내문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담당자께서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1부
2. 위임장 1부
3. 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절차. 끝.

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

사용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

- 사업장 명칭 및 업종 : _____ . 사업주성명 : _____
- 연락처 : (전화번호) _____ (휴대전화번호) _____
- (팩스) _____ (e-mail) _____ @ _____
- * 귀사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데 사용됩니다
- 소재지 : _____

대행기관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

- 명칭 : 중소기업중앙회 . 연락처(전화번호) : 051-861-9375
- 대표자성명: 김 기 문
- 소재지 :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-2 (팩스번호) : 051-711-7361

“갑”은 「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“을”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,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대행수수료)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(W _____)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.

제2조(대행업무 범위)

신규입국자

	대행업무	대행 세부업무	신청여부(✓)
신규, 재입국자 <필수>	근로자 도입위탁 (60,000원)	·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지원	<필수>
	취업교육 (195,000원)	·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	<필수>

신규 입국자 <선택>	각종 신청대행 (86,000원)	입국 전 (43,000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국인 구인신청/ 고용허가서 발급 (재발급) 신청 · 사증발급인정서 신청, 수령 	✓
		입국 후 (43,000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용변동신고(안내) ·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·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, 사망신고 등 	
	편의제공 (76,000원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·번역 지원, 고충상담 및 처리 ·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·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·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, 외국인근로자 관리 실무매뉴얼, 생활용어집 제공 	

*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(43,000원) 및 편의제공 수수료(76,000원)를 기준으로 계산

제3조(수수료 납부) “갑”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“을”에게 납부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(86,000원)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수료환불) “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(마약 반응검사 소요기간 등으로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변동 신고가 가능한 날로부터 14일 이내)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. “갑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.

<수수료 환불계좌 정보>

예금주	계좌번호	은행명	비고

제5조(계약서 효력 등)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.

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“을”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.

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·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

사 용 자 (갑)

(인)

대행기관(을)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(인)



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요망

【 위 입 장 】

『출입국관리법 제9조』 및 『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』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임합니다.

성 명(대 표 자 명) :
업 체 명 :
사업자등록번호 :
주 소 :
전화번호(휴대폰번호) :
팩 스 번 호 :

【 행정대행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】

본인은 귀회가 본인에 대한 행정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항 목 : 성명, 전화번호
2. 기 간 : 대행계약 체결일 ~ 종료일
3. 목 적 : 대행 서비스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·제도 관련 안내 등

대표자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201 년 월 일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

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절차 안내문

□ 도입절차

- (1) 고용허가서 신청(사용자 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고용센터)
 - (1-1) 중소기업중앙회에 고용허가서 신청 및 대행 일괄 신청
 - ※재입국 근로자(성실, 특별한국어시험)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
- (2)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(사용자 ⇔ 고용센터)
 - 고용센터에서 구인 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(3배수)
 -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 중 적격자를 선정 → 고용허가서 발급(유효기간 : 3개월)
 - (2-1) 고용허가서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중앙회(산업인력공단)에 대행신청
 - (2-2)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가상계좌 입금 안내문에 의거 입금
 - 대행 금액 : 1인당 341,000원(신규, 특별한국어시험) / 1인당 205,000원(성실)
- (3) 근로계약 체결(현지 산업인력공단, 송출기관 ⇔ 외국인근로자)
 - 선정된 외국인구직자는 표준근로계약서 확인 후 체결 (전송까지 약 2주 소요)
 - ※근로계약 미체결 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용자에게 대체, 환불 절차 안내
- (4) 사증발급인정서(VISA) 발급 신청(중소기업중앙회 ⇔ 출입국관리사무소)
 -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(사증발급 2~3주 소요)
 - ※ 사증 발급 문자 송부(사용자 및 송출기관 담당자에게 문자제공)
 - 문자내용 : 근로자 이름, E-9, 13월(또는 36월)
- (5) 외국인근로자 입국·도입(송출기관 ⇔ 산업인력공단)
 - 재외공관(현지 한국대사관)으로부터 취업비자 발급 후 입국 (사증발급일부터 6~8주 소요)
- (6) 입국 예정 안내(산업인력공단 및 취업교육기관)
 - (교육기관) 몽골, 태국, 베트남 : 노사발전재단 / 나머지 12개국 : 중소기업중앙회
 - (교육 기간) 입국일로부터 2박3일
 - 5~7일 전, 사용자 문자 및 팩스 통보(회신 필수)
- (7)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
 - 입국 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및 서류 안내(취업교육팀 ☎ 02-2124-3286)
 - * 성실근로자 취업교육 제외
 - * 입국당일 마약검사 대행 (중소기업중앙회 검진 : 한신메디피아 또는 산업보건협회)
 - 마약검사비는 해당 검진기관에서 별도 요금 청구

(8) 교육 수료한 근로자에 대한 인도인수(사용자 ⇔ 교육기관)

- 인도·인수 시 필요서류
 - 사업자등록증, 위임장, 재직증명서, 명판, 도장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 등
- 인도인수 장소 : 교육현장 또는 인천, 대구(구미), 광주

(8-1) 성실근로자는 취업 교육 없이 입국 당일 인천, 대전, 또는 대구에서 인도인수

*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의무보험 가입

- 사업주 : 임금체불보증보험, 출국만기보험 (근로자 인도시)
- 근로자 : 귀국비용보험, 상해보험

(9)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 환급

-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 (2주 후)

* 환급액 : 최저 30,000원 ~ 최고 100,000원 추정

* 양식서류 : 홈페이지(www.minwon.go.kr)에서 다운받거나 인터넷으로 신청

▣ 도입 후 절차 (인도·인수 후) ※인도·인수 후 행정 처리는 사업장에서 진행

(1)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적용

: 외국인근로자(E-9)는 노동법 및 출입국관리법 적용

(2) 외국인 등록 (사용자 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)

-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교부(필수)
 - 마약검사 결과지 (개봉 불가)
 - 표준근로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고용허가서, 근로자 사진 등
 - 근로자와 동행 (지문 날인)
- 외국인등록증이 발급 후 4대 보험 등 가입
- 입국일(인도인수일이 아님)로부터 90일 이내 필히 등록

(3)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·추가

- 외국인근로자(E-9)는 근무처 변경·추가 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변경 신고

(4)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

- 외국인근로자(E-9)에 대하여 재고용(3년 만기 이후)하고자 할 경우 기간(취업) 만료일 1개월전부터 만료 7일전까지 신청

(5) 외국인근로자 연장신청기간 및 고용변동신고

- 취업기간 만료자 연장신청 기간 변경 : 기존 만료일 30일 전에서 60일 전까지 신청 가능
- 고용부(고용센터)와 법무부(출입국관리사무소) 고용변동신고 통합신고 시행